

내부회계관리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제 정 2002.01.01

재제정 2008.01.01

개 정 2009.05.15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2 조의 2 및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2 조의 2 및 제 2 조의 3,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 3 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트로닉스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작성·공시하는 회계정보(회계정보의 기초가 되는 거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내외적인 신뢰를 높이고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외부이해관계자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내부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기업회계기준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부회계관리"라 함은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회계의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고 적시에 발견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관리·통제함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모든 절차와 과정을 말한다.

2.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함은 내부회계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내부 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3. "내부회계관리자"라 함은 법 제 4 조 제 3 항 및 제 4 항의 내부회계관리자를 말한다.

제 2 장 회계정보의 관리

제 4 조(회계정보처리의 일반원칙)

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보고 등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른다.

제 5 조(회계업무의 처리)

회계정보에 대한 식별·측정·분류·보고 등 회계처리 및 회계기록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은 요령으로 처리한다.

1. 회계처리방침

자산·부채의 평가기준, 수익·비용의 인식기준 등 구체적인 회계처리의 방침과 절차를 정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회계담당자는 사용되는 회계처리방법과 절차를 숙지하고 이에 따라야 하며, 만일 회계처리방법이 기업회계기준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내부회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내부회계관리자 역시 같은 판단을 한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한다.

2. 회계방침의 변경

자산의 평가방법, 재무제표의 표시방법 등 회계방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사회는 그 타당성에 관해 감사와 감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회계정보의 보고

회사의 회계시스템에 의해 산출되는 회계정보를 보고할 때에는 그 성격에 따라 보고서의 종류를 구분하고, 보고 의무자, 보고를 받는 자, 보고기한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의 형식이나 보고서 양식은 회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회계거래의 기록방법

모든 거래는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분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의 작성, 회계장부 등의 기록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회계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전산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산프로그램의 명칭과 그 운용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5. 회계정보의 공시

법령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할 회사의 정보에 회계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시 담당자는 내부회계관리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문의하고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서면에는 공시담당자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제 6 조(회계업무처리의 점검)

① 내부회계관리자는 회계정보의 유형별로 또는 회계정보를 산출하는 부서별로 시기를 정하여 매 3 월에 1 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이상의 유무를 대표이사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회계처리방법이 기업회계기준 및 본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2. 전표, 회계보조부, 회계장부, 기타 보고서가 정확한지 여부 및 적절한 보고 및 승인 절차를 따랐는지 여부
3. 최종보고서가 기초 회계정보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4. 회계담당자가 상급자로부터 기업회계기준 및 본 규정에 어긋나는 회계처리를 하도록 지시받은 사실의 유무

② 제 1 항의 조사를 한 결과 기업회계기준 및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고, 그 원인과 관련자에 관해 대표이사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조(회계기록의 관리·보존)

- ① 회사는 전표, 회계보조부, 회계장부 등 모든 회계정보의 보관 및 관리는 회계부서로 위임한다.
- ② 회계부서는 회계전표 및 회계장부 등 회계관련 정보를 회사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 한다.
- ③ 문서창고의 보안은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보관상태를 점검하여 화재 등 정보의 파손이나 도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되어야 한다.

제 3 장 조직 및 운영

제 8 조(대표이사)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원활히 작용하도록 관련 임직원을 교육하고, 필요한 설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 9 조(내부회계관리자)

- ① 대표이사는 회사의 상근하는 이사로서 회계를 관리할 능력이 있는 자 중 1 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명한다. 내부회계관리자는 정기총회직후 지명하여 다음 정기총회종료일까지 직무를 담당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체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하도록 하며, 그 중간에 교체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2009.05.15)
- ② 내부회계관리자는 매 사업년도가 경과한 후 개최되는 이사회에 이 규정에 따른 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해 보고하고 같은 시기에 감사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05.15)
- ③ 내부회계관리자는 본 규정 제 2 장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며, 이사회 또는 감사(또는 감사위원회. 이하 같다)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10 조(회계정보관련 업무분장)

회사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담당하는 임원 및 직원의 업무는 회사의 업무분장안을 기준으로 한다.

제 11 조(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의 지시 등)

- ① 대표이사 기타 임·직원이 회계정보담당자에게 이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의 회계정보를 작성 또는 공시할 것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정보담당 임·직원은 이를 내부회계관리자 및 감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내부회계관리자는 제 1 항의 보고를 받은 후 당해 지시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 1 항에 의해 보고 받은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12 조(감사의 보고의무)

감사는 제 9 조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의해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이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제 13 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공시)

- ① 증권거래법 제 186 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1.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에 관한 사항
 2. 내부회계관리자가 이사회 및 감사에게 보고한 내부회계관리제고 운용실태
 3. 감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용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
 4.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표시한 종합의견
 5.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공시와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
-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는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한다.

제 4 장 보 칙

제 14 조(징계 등)

이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인사규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5 조(규정의 제·개정 및 세부사항)

① 본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한다.

②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의 승인을 받아 대표이사
가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